**[사 건 명]** 행심 2014-10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는 2014. 4. 8. 인천광역시 ○○구 ○○로 ○○에서 국제 표준무도(라틴5종목, 모던5종목)과정의 댄스 스포츠학원의 설립 · 운영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나.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이 신청한 무도학원의 경우 그 교습과정이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의한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23.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5. 1.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Ⅱ. 청구인 주장

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무도학원업' 에 해당될지라도 시설 이용 목적이 "예능"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댄스 학원으로 교습 시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설립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수원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2구합13901, 서울고등법원 2013누18867, 대법원2014두366,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 재결 등)

나. ○○교육청 등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 등록을 허가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 지역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하는 것으로 댄스스포츠업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행정등록 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수리 불가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처분인 것으로, 청구인이 한 학원의 등록 신청을 피청구인은 마땅히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한 처분이므로 명백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무도학원, 무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 무도학원업을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불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대한 댄스스포츠 경기연맹(KFD)" 은 2007. 2. 2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설립된 경기단체 이므로 "체육종목" 의 하나로 분류 되는 것이고,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체육종목 성향이 우세하여 「체육시설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학교보건법 상이나 개별 법률에서도 무도학원업이 유해한 시설로 간주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능을 교습하는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질의 회신한 바 있으며, 2010 법제처에서 '체육계열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법령해석을 한 것은 체육관련 시설은 체육시설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의 국제표준무도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설립 등록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리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

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2011.10.25. 자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 항목이 추가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 되었는 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6에서 건축물용도를 체육시설법의 ‘무도학원’ 은 ‘위락시설’ 로, 학원법의 ‘학원’ 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지 교육연구시설(학원)’ 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도학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에 따른 풍속영업 대상이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라. 청구인이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 원칙에 학생들도 교습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댄스교습과정은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의 유아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아닌 성인을 주로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며, 학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동일한 건축물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영업소(유해업소)가 있을 경우 학원을 설립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관련〔별표2〕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분야 댄스교습과정에서도 제외되는 무도학원(타 법의 유해업소지정)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교습과정(댄스)으로 설립하여 학생들을 교습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것은 학원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마. 특히,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제5호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와 『청소년보호법 제6조에서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고자하는 영업행위가 체육시설법에 의한 ‘국제표준무도과정’을 교습하는것**으로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과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이상과 같이 체육시설법의 학원은 체육관련 교습과정과 학원법의 학원은 지식·기술·예능 교습과정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서로 달리 하고 있으며, 국제표준무도과정을 교습하는 체육시설법의 무도학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시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등 타 법률에서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4. 5. 1. 피청구인에 의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수리불가 회신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1], 제6조[별표2]

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제6조

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0호

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6조 제3호

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카목, 제10호 라목, 제16호 마목

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1호

## 2. 판단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관계법령 및 판례,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284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3조의 2,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나 '무도학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를 개정하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종류 중 기예 계열에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를 추가하였다.

나. 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16701호, 2000. 1. 28)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범위 중에 무도학원업을 신설하였고, 무도학

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이라 규정을 하였으며, 이후 위 규정은 현행법령에서도 같다.

다. 위 2000. 경 체육시설법시행령의 개정취지는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 과정의 경우에는 무도학원으로서 체육시설이지만, 국제표준무도 과정(볼룹댄스)이 아닌 댄스 무도학원의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학원법에는 무도학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으나,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23250호, 2011. 10. 25. 일부개정)은 위 체육시설법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교습과정에 댄스항목을 추가하였고, 다만 기존의 체육시설법시행령에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과정의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규정한 만큼,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 과정은 학원이 아님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명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대법원 판결(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은 이용목적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룹댄스)의 경우에는 학원으로 설립·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나, 위 대법원 판결은 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학원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판결로써 반드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만약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하나의 국제표준무도과정(볼룹댄스)이라는 업을 가지고 체육시설로 신청할 수도 있고, 학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 무도학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이용목적이 체육시설이면서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설립·운영할 수도 있는 탈법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무도학원을 학원으로 등

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법들의 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국제표준무도과정(볼룸댄스)의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 인 만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